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치유관광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 휘 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치유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전문인력 양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치유관광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관광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20920호, 2025. 4. 8. 제정, 2026. 4. 9. 시행)됨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안 제2조)

- 1) 산림, 해양, 강, 호수, 정원, 섬
- 2) 공예, 미술, 음악, 무용, 체육, 명상, 차, 약초
- 3) 맨발걷기길, 둘레길, 사찰, 한옥,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3조, 제4조)

-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함
- 2)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이 포함되어야 함
- 3) 시행계획은 해당 연도의 치유관광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다.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5조)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의 연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라.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등(안 제6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치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사업에 관한 등록 요건은 별표 1로 정함

- 1) 치유관광서비스업 : 치유관광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치유관광객에게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
- 2) 치유관광시설업 : 치유관광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치유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방법, 유효기간, 승계, 표지(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1) 치유관광시설의 입지와 접근성이 치유관광객의 이용에 적절할 것
- 2) 치유관광시설과 전문적 치유관광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연계될 것
- 3)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이 용이할 것
-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5)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해야 함
-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7)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지에는 인증의 명칭, 인증번호, 인증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증표지의 크기, 문양, 색상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바. 실태조사(안 제11조)

- 1) 실태조사에는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 현황, 치유관광프로그램 및 이용자 현황, 치유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종사자 현황,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등을 포함하여야 함

- 2)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사.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2조)

- 1) 공공기관 또는 치유관광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 2) 치유관광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
- 3)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아.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13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 여부,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자.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4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문적 교육시설, 교육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함

차.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안 제15조)

법 제18조에 따라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치유관광서비스 이용 지원, 지역 치유자원의 개발, 활용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제공을 추진할 수 있음

카.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안 제16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1) 치유관광산업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2)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의 활용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3)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이 타당할 것
- 4) 치유관광사업자간 연계 및 지역 관광산업과 협력이 용이할 것

타.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안 제17조)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음

- 1)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
- 2) 시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8조)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1. 산림, 해양, 강, 호수, 정원, 섬
2. 공예, 미술, 음악, 무용, 체육, 명상, 차, 약초
3. 맨발걷기길, 둘레길, 사찰, 한옥,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제2장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조(치유관광산업 육성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치유관광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의 연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치유관광사업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치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서비스업 : 치유관광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치유관광객에게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
2. 치유관광시설업 : 치유관광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치유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변경
2. 주소 및 소재지 변경

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②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치유관광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관광시설의 입지와 접근성이 치유관광객의 이용에 적절할 것
2. 치유관광시설과 전문적 치유관광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연계될 것
3.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이 용이할 것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평가·심사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승계)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승계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제10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지에는 인증의 명칭, 인증번호, 인증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사항 외에 인증표지의 크기, 문양, 색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11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 현황
2. 치유관광프로그램 및 이용자 현황
3. 치유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종사자 현황
4.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치유관광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일 것

2. 치유관광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

②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일 것

2. 치유관광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

⑤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전문기관”은 “지원센터”로 본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를 지정·지정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적잡한 시설과 인력을 갖출 것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문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문적 교육시설, 교육, 인력,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신청하고, 교육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5조(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치유관광서비스 이용 지원
2. 지역 치유자원의 개발, 활용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제공

제4장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제16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관광산업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의 활용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3.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이 타당할 것
4. 치유관광사업자간 연계 및 지역 관광산업과 협력이 용이할 것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구의 명칭·위치
2. 해당 지구의 특성 및 지정 목적
3. 해당 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계획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
2. 시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5장 별 칙

제18조(과태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은 2027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치유관광사업 등록 요건(제8조 관련)

1.치유관광서비스업

프로그램 등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1) 1개 이상의 치유관광 전문 프로그램(관광객을 대상으로 치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 교육, 상담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시 운영(연간 평균 주1회 이상의 운영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것 2) 치유관광 전문 프로그램의 기획, 컨설팅 또는 위탁운영 및 관리를 수행할 것
전문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치유관광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2. 치유관광시설업

시설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관광사업을 등록하였을 것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각 목의 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한옥체험업 중 숙박시설을 갖춘 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관광펜션업
프로그램 등	2개 이상의 치유관광 전문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것
전문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치유관광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2차	3차

		위반	위반	위반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법 제26조 제1항	40	70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885